

전동차 음성광고 계약조건

제1조(목적)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이하 “발주자”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는 전동차 음성 광고 대행사업에 관하여 본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광고 대행의 범위)

- ① 전동차 내 음성광고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업무
- ② 전동차 내 음성광고의 제작, 입력, 유지관리, 운용에 관한 일체의 업무
- ③ 전동차 내 음성광고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
- ④ 기타 본 계약조건에 열거한 사항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 ①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발주자” 를 피보험자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발주자” 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시기에 불구하고 보증금을 즉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이 보험금 지급 특별약관조항에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 ③ 제19조 ①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상대자” 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발주자” 에게 귀속된다.
- ④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발주자” 의 “계약상대자” 에 대한 제19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주자” 는 “계약상대자” 에게

계약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4조(지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또는 중도 계약해지 시 미납광고료 등의 지급이행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통약관의 면책에 관한 규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시기에 불구하고 보증금을 즉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보험금 지급 특별약관조항에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 ③ 계약 중이거나 계약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제1항의 지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은 반환한다(단, 지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지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채권에 충당한 후 부족 금액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부족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1. 광고연체료, 광고료
 2. 계약만료 또는 해지 후 광고 방송 삭제 비용
 3.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제5조(광고료의 납부)

- ①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표출실적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본 계약 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 광고료(정액 광고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비기간 중 또는 월의 중간에 광고사업을 시작할 때의 광고료는 일할 계산하여 익월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② 광고료의 납기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을 납부일로 하며, 토요일일 경우 은행의 다음 영업일을 납기일로 한다.

제6조(광고연체료)

- ① “계약상대자”가 제5조에서 정한 광고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때는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연18%를 적용한 광고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하는 광고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체납월광고료 × 연체일수 / 연중일 수 × 연체 금리)
- ③ 연체 후 납부한 광고료 등은 광고연체료, 광고료 등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7조(광고료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광고 방송 표출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부산김해경전철 시설물 보수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음성광고를 삭제하였을 때
 3. 기타 “발주자”가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감면 요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기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할 때는 미표출된 일수(최소 1일 운행 시간을 초과한 경우 1일로 간주)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차기 광고료 징수 시 공제 할 수 있다.

제8조(광고료의 추가징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1.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광고 방송을 표출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광고료 산정 시 명백한 하자나 착오가 발생한 때
 3. 기타 추가징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의 사유로 추가 징수할 경우, 초과 표출 수량 또는 착오금액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 등)

- ① 음성광고의 제작·설치·운용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권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권리상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취득 또는 수수료 지

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관리법규 등 준수)

“계약상대자”는 광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기타 유관 단체에서 정한 광고기준과 “발주자”의 광고물 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음성광고 표출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열차 안내방송 이외의 시점에서 일정 시간(10초 내외) 동안 음성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 시점은 각 역 출발 및 도착 시 각각 1개로 하되, 역당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부산김해경전철 안내방송, 공익방송 등으로 표출 시간이 짧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업한다.
- ② 음성광고 표출은 부산김해경전철 20개역(사상역 제외)에서 실시한다.
- ③ 음성광고를 음량이 전동차 안내방송보다 크거나, 음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 ④ 전동차 내 안내방송과 음성광고 상호간섭 예방을 위해 적정 시격을 부여(1~2초)하여야 한다.
- ⑤ 음성광고를 표출 시점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역 출발 시,도착 시)에 따른다.

제12조(음성광고 운영 시 고려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시 “발주자”가 시행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안내방송을 저해하지 말아야 하며, “발주자”의 전동차 내 안내방송 우선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음성광고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동차 내 안내방송이 항상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시 방송 장비 메모리 부족 및 음원 방식이 달라 별도의 음원 편집 및 입력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음성광고 운영 기간 중 언론 보도 등 비판적인 사회여론이 조성되거나 “발주자”의 주무관청에 의해 시정 권고 등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광고 방

송 대상역, 광고 횟수, 광고 표출 시간 조정 및 광고 중단 등으로 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13조(음성광고 제한사항)

광고 방송은 역 간 거리가 짧거나 또는 기존 안내·홍보 방송으로 인한 광고 방송 시간이 짧거나, 소음 발생이 심한 구간, 방송 장비 저용량(사양) 등으로 인해 음성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금지음성방송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성방송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정한 광고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광고
2. 부산김해경전철 안전운행과 이용 시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
3. 부산김해경전철 시설물에 대한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여객, 공중 또는 “발주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
4.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이나 업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
5. 타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
6. 기타 민원 소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발주자”의 광고물 관리 규정 등에 저촉되는 광고

제15조(음성광고 입력)

- ①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문안 및 음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음원을 “발주자”의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차량 기지에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수탁 직원 입회하에 전동차 내 자동안내방송장치에 월별로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내 음원 입력 전, 안내방송 및 음성광고 정상 상태 여부를 사전 시험 및 전동차에서의 정상 동작 상태를 확인한 후 전체 전동차 내 업로드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의 음성광고 음원 입력 후 전동차 내 안내방송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 ① 계약기간 중 전동차 내 음성광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한다.
 1. 전동차 내 음성광고를 위한 입력 및 음원 편집(추가·변경·삭제), 시험, 표출 등 음성광고에 필요한 업무 일체
 2. 전동차 운행 중 음성광고 오류 등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 표출에 대한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부산김해경전철 안전운행과 이용 시민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계약 물량 및 표출 시간 등의 조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음성광고 등의 표출 시간, 물량 및 표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1. 민원 발생 등으로 기 계약된 물량의 조정 및 표출 방법과 위치 변경이 필요할 때
 2. 전동차 도입·개조 및 전동차 여건 변동과 부산김해경전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 계약된 물량 및 표출 시간, 표출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때
 3. “계약상대자”가 물량 또는 표출 시간 및 위치의 변경을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때
- ② 제1항에 의거 광고료 조정이 필요한 때는 기 계약된 단가에 계약물량에 비례하여 산출된 단가에 의거 조정하며 조정기준일은 “발주자”가 승인한 날로 한다.
- ③ 제1항에 의거 광고료를 조정할 때는 기 계약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의거 산출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음성광고 등의 삭제 의무)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발생일로부터

터 10일 이내에 당해 음성광고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때
 2. 표출 승인이 취소된 때
 3. 기타 “발주자”가 공공상 또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계약상대자”가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승인받지 않은 음성광고를 표출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음성광고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비용(대집행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그 제거물의 대가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 기간 만료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광고료를 9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 대행에 관한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계약 위반으로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
 5. “계약상대자”의 해산, 파산, 회사정리 등이 신청된 경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
 6.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의 유포·중상모략·비방 등으로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계속적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의 시설물 등의 운영을 거부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 “발주자”가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계속적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

③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면, 계약기간 중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규매체 개발 등)

본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광고매체 이외에 부산김해경전철 전동차 내 신규 광고매체를 개발하여 타 사업자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다.

제21조(재대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광고 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대표자 변경 등)

본 계약체결 후 주소·상호·대표자 및 상업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 해결 등)

① 본 계약의 수행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② 본 계약상 분쟁의 합의 관할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4조(조문해석)

본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문 해석과 본 계약서에서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 협의하여 해석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특약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자동안내방송 장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방송 장치에 대한 훼손 및 파손 시 동질의 제품 이상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공익목적의 전동차 운행 등을 위하여 음성광고의 삭제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음성광고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